

미국 혁신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

잭 니카스트로, 로드리고 발본틴, 세진 김 | 202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KFTC) 집행 데이터 분석 결과는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사실상의 편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권한 확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경쟁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불균형 하게 높게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동안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한국 기업 평균 과징금의 21배에 달했습니다.
-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87%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여전히 한국 기업 평균 금액의 3배에 달합니다.
- 대형 미국 기술 기업은 행태적·구조적 시정 조치를 통해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잡는 '시정 명령'과 관련하여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한국 재벌 기업은 훨씬 더 엄중한 형사 고발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 외국 기업의 과징금 점유율은 한국 경제 내 이들 기업의 매출 비중보다 8%포인트 더 높습니다.
- 중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1% 미만에 불과한 반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81% 이상을 차지합니다.
- 한국의 재벌 대기업의 과징금 점유율은 이들의 매출 비중보다 8%포인트 낮습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서론	3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및 규제	4
최근 집행 조치	4
입법 가능성	5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7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한국 및 타국 기업 대비 현저히 높아	7
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비중, 한국 내 매출 비중 대비 현저히 높아	8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편중 현상, 한미 간 갈등 유발	9
미국 빅테크에 대한 편향성 해결 방안	13
경쟁 정책 공약	13
통상 조치	14
결론	17
부록	19
감사의 글	21
저자 소개글	21
ITIF 소개	21
각주	21

서론

미국과 한국은 1953년부터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의 오랜 전략적·경제적 관계는 상호 번영과 안보에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에 69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에 1,25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150억 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수출했습니다.¹ 한국은 미국의 10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² 미국과 한국이 교역하는 상품은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 및 첨단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브로드컴(Broadcom)과 같은 미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SK하이닉스,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반도체 및 첨단 메모리 칩을 100억 달러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³

미국과 한국 간의 상당한 양자 무역 외에도,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25년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FDI) 잔액은 주로 자동차 부품 및 산업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9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4년 미국의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잔액은 3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⁴ 2025년 7월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약, 조선 등의 산업 확충을 위해 추가로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다국적 기업(AMNE)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 기업은 쿠팡은 자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인프라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시장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⁶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적이고 수탈적인 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은 자사 기업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엄청난 기여도에 반해, 한국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수행하는 강압적인 집행 방식, 불투명한 법적 절차, 그리고 과도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미국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존 반독점법을 가혹하게 집행하는 데 더해, 이들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큰 준수 비용을 부담시킬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대적인 태도는 AI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 간의 경제·기술 협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⁷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차별적 행태와 유사하게,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산업별 사전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⁸ 이러한 규제는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의 DMA 시행 및 집행 사례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⁹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DMA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⁰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적이고 수탈적인 규제 정책을 준수하느라 혁신에 쓰여야 할 인력과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주요 제재 조치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짚어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집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기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정위 전체 과징금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명백한 편향 징후가 지속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대응 방안들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섹션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 모두를 위해 상호 이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및 규제

최근 집행 조치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한미 경제 관계에서 지속적인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기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 왔습니다.¹¹ 쟁점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관련된 일련의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에 가해지는 누적된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해당 기록 자체가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더 무거운 법 집행 부담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공합니다.¹²

미국 기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쉐프린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쉐프린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및 모뎀 칩 판매 행위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쉐프린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¹³ 대법원은 경쟁 모뎀 칩 제조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거부·제한 행위 및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한 모뎀 칩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의 연계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한 반면,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판단은 기각했습니다.

구글 역시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법 집행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안드로이드 파편화 방지 계약(AFA) 건으로 당초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발표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2,249억 3,0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¹⁴ 2023년에는 게임 개발사들이 Google Play와 경쟁하는 한국의 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인 윈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¹⁵ 2026년 7월, 공정위 사무처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구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구글의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Games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대해 심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구글이 경쟁 앱 마켓 대신 Google Play를 우대하는 조건을 걸고 이러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¹⁶

쿠팡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제품에 유리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¹⁷ 이후 의결서에서는 최종 과징금이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¹⁸ 해당 공정위 의결의 피심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의 한국 자회사 쿠팡(주)과 CPLB(주)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2024년 9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¹⁹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6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산하 임시 조직인 '중점조사기획과'라는 임시 고순위 조사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²⁰ 이 부서는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결정 및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²¹

절차는 제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은 미국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5년 11월 전미아시아연구소(NBR) 보고서는 일관된 불만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증거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공격적인 현장조사(dawn raids),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이러한 요구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의 실질적 부재, 그리고 위반 혐의 사실 및 경쟁 제한성 논리(theory of harm)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입니다.²² 또한 인터뷰에서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조사 범위나 중점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 대응하거나 방어해야 할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복잡한 제품 설계, 순위 산정, 결제, 데이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에 크게 좌우되는 디지털 경쟁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소명해야 할 혐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은 집행 기관이 위반 사항을 확정하기도 전에 더 높은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절차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경쟁법뿐만 아니라 통상에 대한 우려도 자아냅니다. 관련된 비차별 원칙은 현재의 분쟁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각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 정책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결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²³ 또한 한국과 미국은 2025년 11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보다 광범위한 양자 간 약속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중립성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또한 조사권, 증거 접근권, 제재, 그리고 사법적 심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류 중인 입법 안건은 이러한 시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입법 가능성

이러한 집행상의 우려는 비단 디지털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퀄컴(Qualcomm) 사건은 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 칩과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경쟁정책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은 건별 사후 집행을 넘어 공정위의 정책 수단을 확장할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중요한 참고 모델로 삼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²⁴ 이 법안 제정안은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²⁵ 이는 개별 행위가 발생한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입증하던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방식의 단독행위 규제 틀에서 벗어난 시도였습니다.²⁶ 또한, 이는 별도의 사전 규제(ex ante regime)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플랫폼 시장에 맞게 보완하는 데 그쳤던 2023년 1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보다도 더 나아간 조치였습니다.²⁷

하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은 원안 그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²⁸ 202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개정 추진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²⁹ 개정안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했지만, 여섯 개 서비스 범주(모두 디지털 플랫폼)에 걸쳐 대형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규정, 앞선 제안과 관련된 여러 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최대 과징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지했다.³⁰ 법적 형식은 변경되었지만, 정책의 핵심 내용은 상당 부분 유지된 셈입니다. 이후 입법 논의는 단일 모델로 수렴하기보다 오히려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을 포함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방식의 경쟁 규제와 계약, 정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플랫폼-입점업체 간(P2B) 공정화 규제를 모두 추진해 왔습니다.³¹

현재 주목받는 주요 발의안 중 하나는 2025년 12월 9일 의안번호 제2215044호로 발의된 이정문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³² 이 법안은 적용 대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 교부, 주요 조건 공개,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통지, 그리고 법정 정산 주기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금의 최소 50% 이상을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 및 투명성 요건의 일부는 미국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의된 '2026년 온라인 판매자 권리장전법(H.R. 9799)'은 중대한 정책 변경 시 사전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계정 정지 및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³³

이 법안의 제1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서비스 제한 또는 거절, 차별적 대우, 거래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등 명시된 유형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역시 미국 법안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의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S. 4746)'은 차별적 대우, 끼워팔기, 그리고 사업자(입점업체)의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앱스토어 자유법 (H.R. 3209)'은 특정 끼워팔기 및 앱 개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³⁴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조사권, 시정명령권, 동의의결권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식 입법 기록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소관위 회부 이후 12월 16일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법상 구제조치를 넘어서는 정산 및 자금 분리 관리 요건 등을 포함하여 플랫폼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신설하게 됩니다.³⁵ 제13조에서는 여러 유형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들의 실제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해석 및 하위 집행 규정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 이후 한국의 일반적인 행정 및 법원 절차를 통한 사법적 심사(재판)는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새로 신설되는 플랫폼 특화 의무에 맞춘 별도의 불복 상소 절차 체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³⁶ 이러한 특징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준수 부담과 소송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크게 작용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³⁷

이는 형식적으로는 국적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가할 수 있는 한국의 규제 조치들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³⁸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국내적 권한을 넘어, 경쟁 및 디지털 규제가 집행되는 방식을 제약하는 절차적 기준, 통상 규칙, 그리고 양자간 합의까지 포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과징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불균형하게 무거운 제재 부담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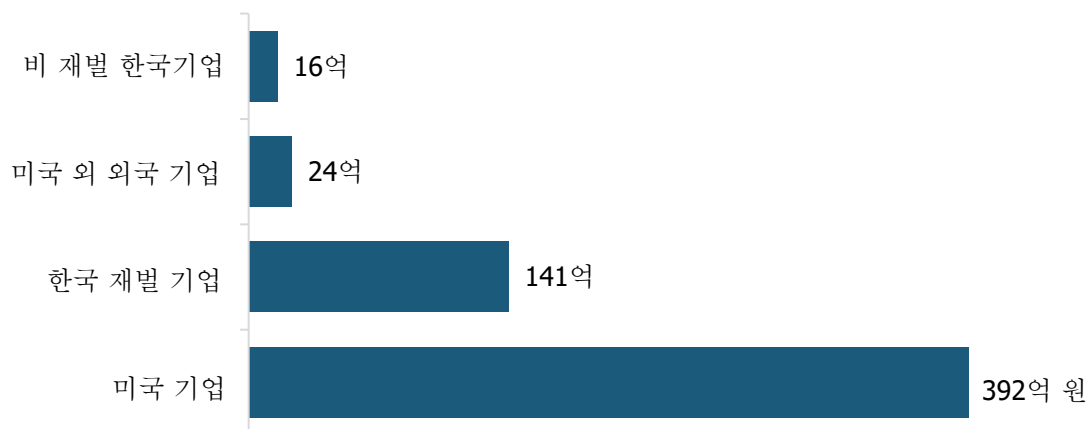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25년까지, 2016~2025년의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한 평균 과징금(공정위의 근거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위반에 대해 부과된 행정제재금)을 미국 외 외국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과 비교·계산했습니다. 분석 대상인 미국 기업들과 유사한 규모의 한국 기업들을 비교하기 위해 재벌 그룹(본 분석에서 재벌로 분류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의 4개 그룹과 계열사)과 비재벌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한국 및 타국 기업 대비 현저히 높아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재벌 대기업이 부과받은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이었고, 비재벌 한국 기업은 16억 원, 미국 외 외국 기업은 24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 부과받은 평균 과징금은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재벌 한국 기업의 24.8배, 한국 재벌 대기업의 2.8배, 한국 기업 전체 평균(약 19억 원)의 21배, 그리고 미국 외 외국 기업의 16.6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림 1: 국적 및 규모별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³⁹



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비중, 한국 내 매출 비중 대비 현저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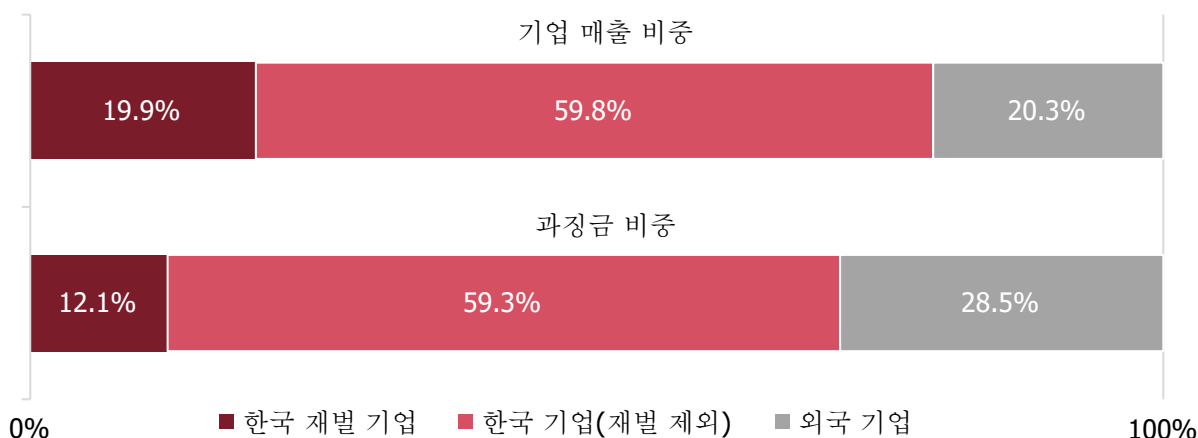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경제 내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 공정위가 핵심 반독점 위반 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국내 특정 시장에서의 매출액인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과징금의 비례성을 단순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정위 과징금 총액 중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이들 기업이 한국 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⁴⁰ 만약 이 두 비중이 대략 일치한다면, 과징금이 국내 시장에서 각 기업이 벌이는 경제 활동 수준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이 공정위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전체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의 20.3%를 차지한 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에서는 28.5%를 차지했습니다.⁴¹ 중국이 한국의 최대 상품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⁴² 반면, 미국 기업은 202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국과의 전체 상품 무역액이 중국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과징금 총액의 8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⁴³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 기업 과징금 중 중국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은 8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코리아(Business Korea)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전체 기업 매출의 19.9%를 한국 재벌 대기업이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비중은 12.1%에 그쳤습니다.⁴⁴ 외국 기업 매출과 재벌 매출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계산한 비재벌 한국 기업의 매출 비중과 과징금 비중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59.8%와 59.3%였습니다.

그림 2: 국적 및 규모별 과징금과 기업 매출의 추정 비중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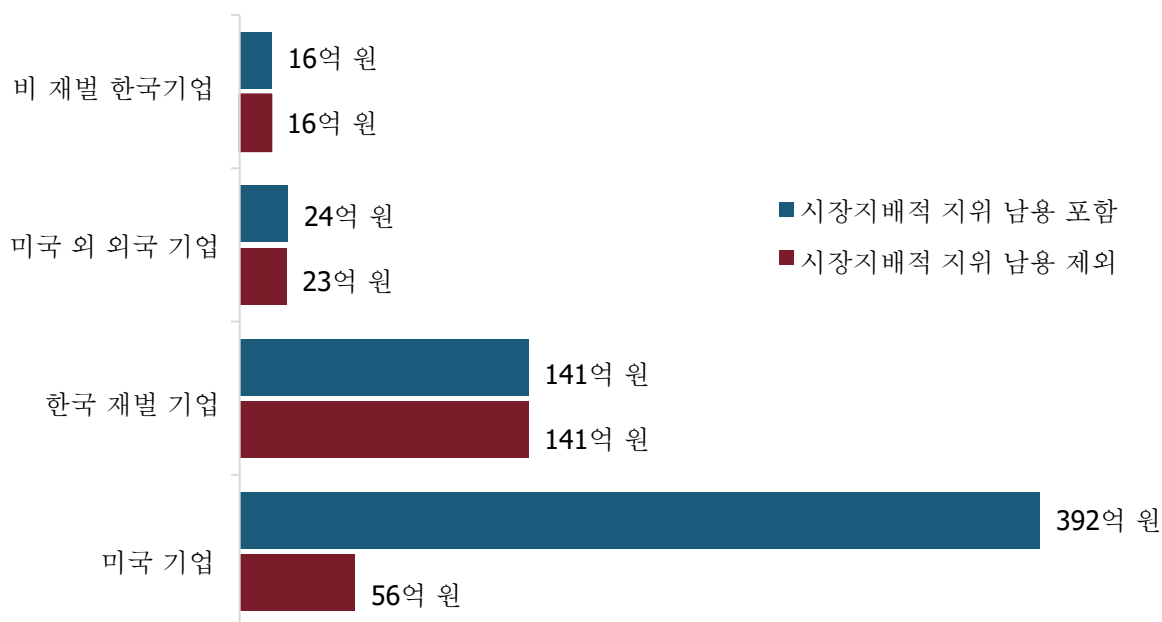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편중 현상, 한미 간 갈등 유발

미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4건과 관련된 과징금은 미국 기업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2017년 쉐링크의 위반 2건에 따른 과징금이 약 ₩1.2조원이며, 구글의 2021년 및 2023년 위반 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2,560억원과 ₩440억원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미국 기업에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제재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그림 3은 분석에서 해당 위반 유형 전체를 제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5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인 약 16억 원의 3배를 넘었고, 한국 전체 평균인 18억 원의 3배였으며, 미국 외 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인 23억 원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재벌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으로 미국 기업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재벌 기업들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특히 입찰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재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가장 최근 사례는 2015년 LG에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이는 미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평균과징금인 3,820억 원⁴⁶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보다 최근인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만 비재벌 기업인 카카오가 각각 280억 원과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⁴⁷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비재벌 대기업인 네이버가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조차 미국 기업에 부과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Google의 2023년 440억 원 과징금.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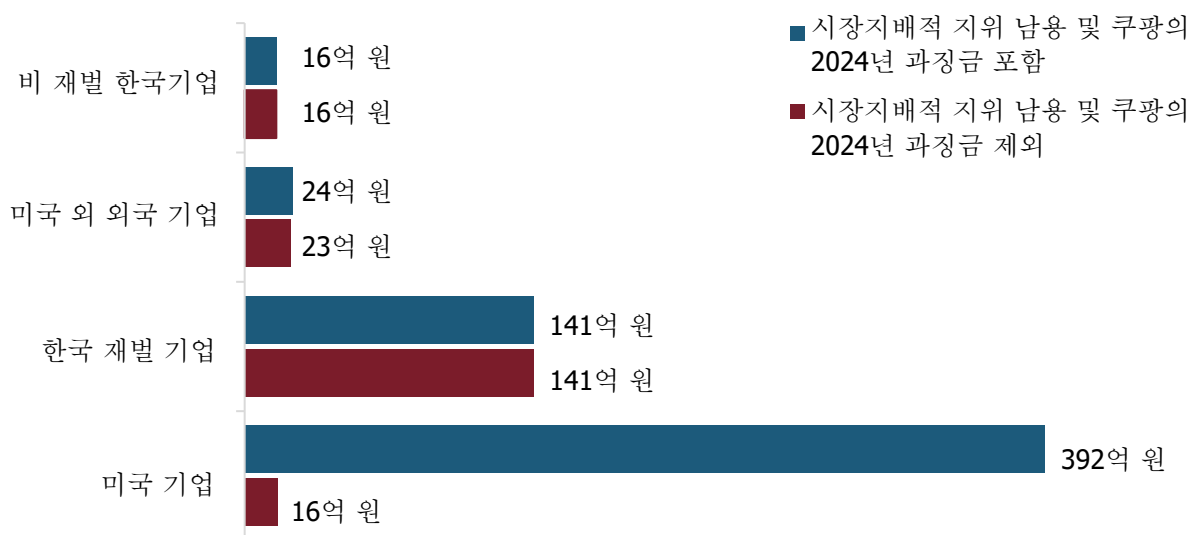
그림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외한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⁴⁹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5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인 약 16억 원의 3배를 넘었으며, 미국 외 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인 23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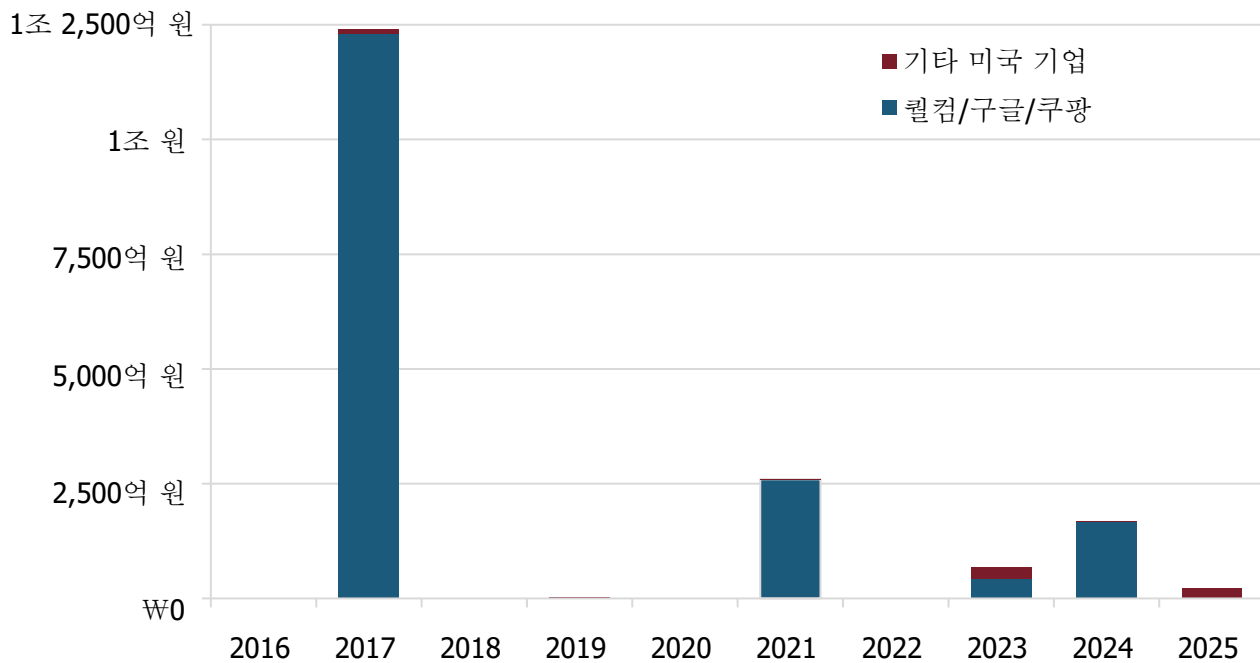
매우 규모가 큰 미국기업 과징금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립니다.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해당 위반 유형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간값인 6억 2,400만 원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 더해 이 과징금(쿠팡 건)까지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비재벌 한국 기업의 평균인 16억 원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됩니다. 한편 미국 외 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23억 원, 한국 재벌 대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140억 원을 각각 유지합니다.

그림 4: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모든 연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테고리 및 2024년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외⁵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외하고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과징금을 제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 부과액이 재벌 대기업보다 낮아지고 비재벌 한국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사실이 동등한 처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주요 선도 기술 기업들에 예외적으로 과도하게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림 5]는 쉐일, 구글, 그리고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1조 7,600억 원의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의 96.5%에 달합니다.

그림 5: 쉘컴, 구글, 쿠팡 및 기타 모든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2025년 원화 기준)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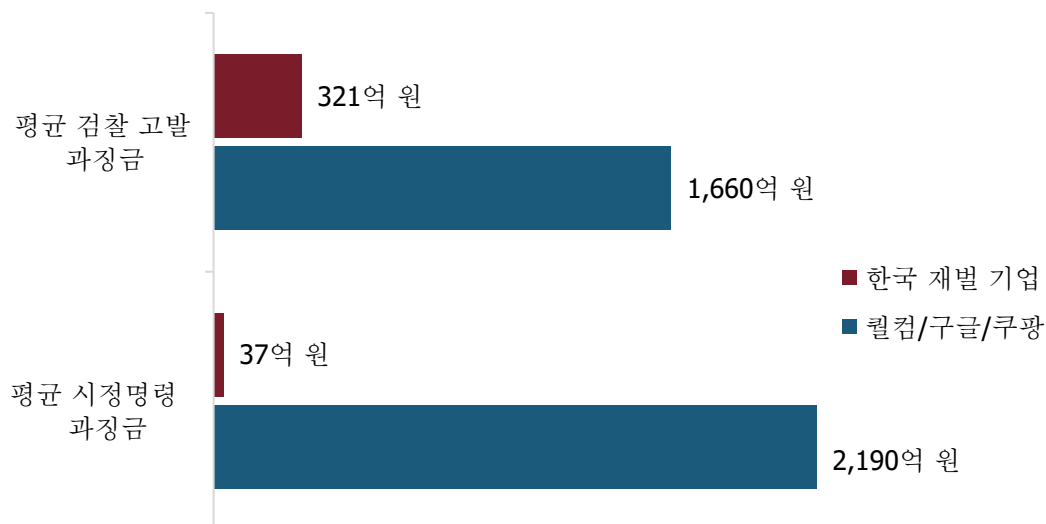


쉘컴, 구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에 부과된 과징금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가능한 한 통제된 상태에서 이들 미국 기업 하위 표본의 평균 과징금을 한국 기업 중 평균 과징금이 가장 높은 재벌 기업 하위 표본의 평균 과징금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참조: 그림 1, 그림 3, 그림 4).

그림 6을 보면 미국 기업 하위 표본에 부과된 평균 시정명령 과징금 2,190억 원은 재벌 기업의 평균 시정명령 과징금인 37억 원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의 평균 검찰 고발 건 과징금인 320억 원보다도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찰 고발 조치는 단순 시정명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위법 행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일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위반 사업자의 "위법성 점수(각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됨)가 1.8점 이상"인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⁵² 실제로 해당 평가 기준표에서 시정명령은 2.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검찰 고발은 3.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⁵³

2017년 쉘컴과 2021년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검찰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 조치에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7,190억 원 및 5,120억 원(쉘컴, 2017년) 그리고 2,560억 원(구글, 2021년)]은 2021년 부당지원행위로 삼성에 부과된 가장 높은 검찰 고발 과징금(1,150억 원)이나 같은 해 공공조달 입찰 담합으로 현대제철에 부과된 검찰 고발 과징금(1,030억 원)보다 훨씬 더 큼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2024년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검찰 고발 건 과징금은 삼성에 부과된 과징금보다 44% 더 높습니다.

그림 6: 위반 유형별 평균 과징금, (2016~2025년, 2025년 원화 기준)⁵⁴



이들 선도적인 미국 기술 기업들에 집중된 불균형적으로 높은 과징금 부과 패턴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집권 하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진행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규제 추진 행보로 일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2019~2022년 재임)은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고강도의 사전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이 언급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거래 촉진 집중" 방침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별개의 법안입니다.⁵⁵ (2021년 1월 정부입법 제2107743호로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 2024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⁵⁶ 나아가 공정위가 2021년 12월 구글에 2,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조성욱 위원장 재임 당시의 일로, 이는 2017년 퀄컴 과징금 이후 미국 기업에 부과된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의 후임인 한기정 위원장(2022~2025년 재임)은 한 발 더 나아가 2023년 12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달 한기정 위원장은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적시성 있는 규제 도입을 통해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 2024년 공정위의 정책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⁵⁷ 비록 한 위원장이 2024년 9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PCPA)과 그 사전 규제 틀을 최종 철회하기는 했으나, 2023년 12월 구글에 부과된 440억 원의 과징금과 2024년 8월 쿠팡에 부과된 1,660억 원의 과징금 역시 한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에서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한기정 위원장의 후임으로 주병기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통상 협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⁵⁸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사전 규제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쿠팡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⁵⁹ 2026년 7월, 주병기 위원장의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 개시를 발표했습니다.⁶⁰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1일에는 쿠팡이 8월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사전 통지 없는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법적으로 요구되는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⁶¹

미국 빅테크에 대한 편향성 해결 방안

앞서 살펴본 정량적 분석은 가장 최근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분석 및 올해 초와 2025년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 제기된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편향성 관련 질적 분석에 신뢰성을 더해줍니다.⁶² 따라서 이제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종식하기 위해 국제 협정은 물론 국내 권한을 포함하여 활용 가능한 어떤 수단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쟁 정책 공약

OECD 경쟁법 집행에 관한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⁶³ 미국은 OECD의 20개 창립 회원국 중 하나였으며, 한국은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⁶⁴ OECD는 38개 회원국 및 협력국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통계를 발표하며 정책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과와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⁶⁵ 이러한 기준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국제 협정인 반면, 일부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및 선언 형태를 띠니다. 그러한 구속력 없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10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된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이하 권고)'입니다.⁶⁶

이 권고는 준수국들이 "경쟁법 집행이 비차별적이고, 비례성을 갖추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⁶⁷ 해당 권고를 제안한 경쟁위원회는 "2011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살펴왔으나", 이 권고의 결실을 맺은 2년간의 협의 과정은 2019년 경쟁위원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⁶⁸

미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해당 권고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해당 권고가 제정될 당시 각각 마칸 델라라힘(Makan Delrahim)과 김형배를 통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늘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⁶⁹ 비록 이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그 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보고서가 밝혀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조사 대상의 국적이나 소유 구조에 대한 편견 없이 경쟁법 집행을 수행하라"는 권고상의 지침을 점점 더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절차적 불투명성은 권고안의 핵심 조항들 즉,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할 것", "정보 요구, 현장 조사 및 인터뷰에 대한 일관된 규칙과 지침을 가질 것",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⁷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우에 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들이 증거 및 정보를 입수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3월 공정위의 절차적 규칙과 관련하여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⁷¹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의거하여 이 협의를 요청했으며, 비차별적 반독점

집행과 KORUS FTA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소단원에서 다룹니다.⁷²

한미 FTA, 제16장: 경쟁법 및 반경쟁적 기업 행위

2019년 3월 15일, USTR은 한국이 한미 FTA 제16.1.3조, 즉 서명국이 경쟁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여금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및 기타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⁷³ USTR은 한국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개정안이 "공정위 심의 절차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⁷⁴

2019년 7월 9일, USTR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양자 협의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일본·한국·APEC 담당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한미 FTA [제16.1.3조]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⁷⁵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을 개정하여 "요청 시 피심인의 증거 서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조사관의 잠재적인 '저인망식/별건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조사 전에 조사 목적, 예상 기간 및 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공식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⁷⁶ 나아가 2020년 12월, 공정위는 "피심인의 외부 대리인이 영업비밀로 분류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규칙을 채택했습니다.⁷⁷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행정규칙 채택이 법률상으로는 USTR이 제기한 절차적 우려를 해소했으나, 올해 1월 그리녹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제출한 301조 청원서가 명백히 보여주듯 사실상으로는 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⁷⁸

특이하게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양자 협의에서는 현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미 FTA 조항인 '차별적 집행' 조항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경쟁 당국에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인이 아닌 자를 자국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⁷⁹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상으로 공정위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어느 당사국도 제16.1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⁸⁰ 한미 FTA는 단지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이 "협조에 응하고" 상대국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충분하고 전향적인 고려를 기울일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⁸¹

결과적으로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와 '한미 FTA 제16장' 모두 사실상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고서의 다음 섹션에서는 선도적인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 양자 협정 및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어떻게 발동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상 조치

한미 통상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당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큰 균열은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던 2025년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⁸² (다만, 이 '해방의 날' 관세는 이후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⁸³ 당시 행정부는 초기에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⁸⁴ 이는 한미 FTA(KORUS)를 통해 달성한 관세 자유화 정책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까지 한미 FTA는 양국 간 평균 관세율을 3%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미 낮추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 상품 수출의 약 95%가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었고, 남은 관세 대부분도 2026년까지 철폐될 예정이었습니다.⁸⁵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에서 한국 내 모든 차별적인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 및 불균형적인 경쟁 집행을 사실상 종료 했어야 합니다.

관세는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표 1 참조). 주요 이정표는 2025년 7월에 발표되고 11월에 세부 사항이 공개된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으로, 상호 관세 체제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합산 관세율을 설정하는 한편,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⁸⁶ 해당 협정은 관세를 넘어 경제 안보 및 국내 규제와 같은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특정 부문에 대한 232조 관세 제외)

날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이정표
2025년 1월-4월	3% 미만	KORUS의 이행 ⁸⁷
2025년 4월	기본 세율 10%; 한국의 경우 3개월 후 25%로 인상	“해방의 날” 관세 ⁸⁸
2025년 7월 7일	25%	트럼프는 합의가 없을 경우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⁸⁹
2025년 7월 31일	15%	미국과 한국은 무역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⁹⁰
2025년 11월 13일	관세율은 적용 가능한 KORUS/최혜국대우(MFN) 세율과 15% 중 더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 발표 ⁹¹
2026년 2월 20일	IEEPA 관세 철회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포함한 IEEPA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⁹²
2026년 2월 24일	10%	미국은 IEEPA 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했습니다. ⁹³
2026년 7월 24일	적용 대상 상품의 합산 관세율 12.5% 원칙. 기본 세율이 그 이상인 경우 및 면제 품목은 예외	제122조의 효력이 만료되었고, 미국 정부는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한 제301조 조사에 따라 ⁹⁴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SCOTUS)이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보다 광범위한 한미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미 전략 무역·투자 합의는 유지되고 있으나, 관세 체계는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제301조 조치에 따라 적용 대상 한국산 상품의 합산 관세율이 원칙적으로 12.5%가 되었으며, 기본 세율이 그 이상인 경우와 면제 품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의 이행

한국 전략 무역·투자 협정(또는 공동 성명)은 한국이 "경쟁 사건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합니다.⁹⁵ 또한 이 협정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⁹⁶ 이 협정은 한국 내 모든 차별적인 형태의 플랫폼 규제와 불균형적인 경쟁 집행을 사실상 종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정 직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⁹⁷ 그러나 '공정화법'은 공정위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사·제재 재량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세부적인 규제 제약을 가하며,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규제적 제약을 부과하며,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⁹⁸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집행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이미 양국 무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양측은 무역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2025년 말까지 특정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6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쿠팡 조사 및 더 광범위한 디지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로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⁹⁹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집행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이미 양국 무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USTR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2025년 11월 약속을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미국 무역 협상가들의 확고한 입장의 하나로 다루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동 성명에서 예상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디지털 규제가 무역 갈등의 반복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응하는 제301조 발동

제301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위반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도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¹⁰⁰ USTR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하여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이 권한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¹⁰¹ USTR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 한국 정책 결정자들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01조 조치는 차별적인 한국의 집행이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1조 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제302조 (a)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STR은 제302조 (b)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¹⁰² 전자는 이미 한국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쿠광의 미국 투자자들인 그린오크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얼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가 이러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¹⁰³ 이 청원서는 USTR에 차별적인 것으로 주장되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구제책들과 함께 더 강력한 차별금지 및 적법 절차 준수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근거는 2025년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당국이 쿠광을 상대로 불균형적인 다부처 합동 단속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인들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당국이 대응한 방식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서는 더 나아가 쿠광의 사례가 "한국 정부의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행위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¹⁰⁴

폴리티코 프로(POLITICO Pro) 보도에 따르면, 그린오크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얼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청원은 2026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와 회의 및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처우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제301조 조사를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최종 철회되었습니다.¹⁰⁵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의 분석은 청원서에서 처음에 주장했듯이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일상적으로 미국 기업에 공격적인 수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추가로 보여줍니다.¹⁰⁶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증거는 미국 기업에게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규제 및 그 집행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301조 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이로써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먼저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USTR은 한국의 관행을 막는 데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관세를 넘어, 한국의 서비스에 수수료나 제한을 부과하거나 기타 무역 양허를 정지함으로써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처우에 관한 오래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긴밀한 동맹국이자 서로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한국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통해 미국의 AI 스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석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는 엄청나며, 상호 풍요롭게 하고,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방탄소년단(BTS), TV 시리즈 *CSI* 와 *오징어 게임*, 영화 *오디세이(The Odyssey)* 와 *브로커(Broker)* 는 양국 시장에서 Apple Music 또는 YouTube music, Netflix 또는 Amazon Prime을 통해 유통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사실상의 편향이 존재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미국 기술 기업,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이커머스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중소기업(SME) 모두에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행위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되면 제301조 조사가 발동될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 한국의 경제 모두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행보에 동참할게 아니라, 그 적용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장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존의 반독점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경쟁법을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위반 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과도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위반을 한 국내 기업보다 불균형하게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태도를 고수한다면, 한미간 전략적 관계가 불필요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록

해당 데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부과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57건의 관측 데이터는 10년간, 20개 국적의 기업 그리고 12개 위반 유형을 포괄합니다: 12개의 위반 유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 표시·광고, 부당한 담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의결서 번호당 기업별로 여러 건이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명목상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25억 4천만 원에 달하며, 명목 과징금의 총액은 6조 6,874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본 분석은 과징금의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시점 간 비교도 다룹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하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인플레이터 계수표를 구축함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¹⁰⁷ 10년간의 실질 과징금 총액은 7조 5,966억 1,765만 2,891원(W7,596,617,652,891)에 달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데이터' 섹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 금액들은 2025년 기준 실질가치로 보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및 규제' 섹션의 과징금은 명목 금액으로 보고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부당한 공동행위(4조 4천억 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1조 6천억 원), 불공정거래행위(1조 원)가 전체 금액의 93%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과징금 위반 유형의 순위는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5조 4천억 원)의 대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4조 1천억 원), 불공정거래행위(8,060억 원), 부당 하도급거래(1,750억 원)에서 발생한 반면, 미국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1조 8,000억 원)의 대부분은 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1조 5,000억 원), 불공정거래행위(1,930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280억 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총 3,157건의 관측치 및 7조 6천억 원의 총과징금 중, 국제합작투자, 이중 본사 소재지 또는 그 자회사라는 이유로 복수 국적이 부여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26건으로 16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작법인 및 이중 본사 소재지 기업의 국적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기업 국적에 미국은 포함되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 취급되었으며, 기업 국적 중 적어도 하나가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기업 관련 합작법인"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카테고리는 한국이 관련된 합작법인이 '미국' 또는 '미국 외 외국' 카테고리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 사건처리정보 웹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¹⁰⁸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결일, 대표조치유형(고발 및 과징금), 대표위반유형을 기준으로 공정위 웹사이트를 필터링하여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본문검색에 "과징금"을 포함했습니다. 각 사건에 해당하는 PDF 문서에서

추출하여 기록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유형(고발 또는 과징금), 사건번호, 의결서 번호, 사건명, 기업명, 기업 국적, 다국적기업 여부, 업종, 법적 위반, 위반 카테고리, 의결일, 명목 원화 기준 과징금액.

초기 검토 결과, 449건의 중복 데이터와 명목 금액 기준 7,259억 400만 원(W725,904,000,000)의 과징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중복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A. 여러 주체에 걸쳐 연대납부 대상인 동일 과징금이 여러 법인에 중복 기재된 경우, B. 위반유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C. 조치유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D. 완벽히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E. 의결서 번호의 서식만 달리하여 동일한 행이 반복된 경우. 이 과정에서 "국적" 및 "의결일"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십여 개의 행이 확인되었으며, ITIF는 온라인 조사와 데이터 내 동일한 의결서 번호를 가진 행을 참조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이를 각각 수정했습니다. ITIF는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협력했습니다. ITIF와 CCIA의 공동 작업 결과, 총 628건의 중복 데이터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명목 금액은 1조 6,080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건의 명목 금액 5,620억 7,300만 원은 미국 기업에 부과된 금액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ITIF는 2025년 원화 기준 실질 과징금액을 위한 새로운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목 금액에 해당 처분 연도의 인플레이터를 곱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기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1.73% 상승했으므로, 2016년 의결건의 명목 과징금액에 1.2173을 곱하여 실질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ITIF는 또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및 그 계열사들과 관련된 모든 과징금을 식별하기 위해 '재벌' 열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내에서 이러한 기업 37개사를 식별했으며, 이는 65건의 관측치 및 9,190억 8,794만 9,517원에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매출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총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1,518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한 세계은행의 2024년 한국 기업조사(WES)를 활용합니다.¹⁰⁹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한국 내 270,199개 기업을 대표하며, 이 중 외국 기업은 1,993개사로 한국 총매출의 20.3%를 차지합니다. 더 정교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의 대기업과 외국의 대기업을 비교했어야 하나, 세계은행 기업조사(WES)는 세부 분해 수준까지 대표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외국 기업의 매출 비중과 과징금 점유율을 비교하고자 한 동기는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시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비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 활동이 전체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반드시 엄격하게 비례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활동이 경제 전체 비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복 데이터 및 과징금 액수와 관련이 없는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의 글

저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도와준 조셉 코니글리오와 통찰을 공유하고 편집에 대한 피드백 및 지원을 제공해 준 대니얼 카스트로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자 소개글

잭 니카스트로(Jack Nicastro)는 ITIF 슈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Schumpeter Project on Competition Policy)의 정책 분석가입니다. ITIF에 합류하기 전, 책은 <리즌(Reason)>지에 반독점, AI, 경제학에 관한 글을 다수 기고했습니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산업조직론 세부 전공으로 경제학 학사 학위 및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로드리고 발본틴(Rodrigo Balbontin)은 ITIF에서 무역, 지식재산권(IP) 및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부이사입니다. 그는 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 기술, 혁신 거버넌스 분야 연구 및 정책 설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식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학위를, 칠레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세진 김은 ITIF 한국혁신경쟁력센터에서 AI, 블록체인, 우주, 신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정책 분석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 생태계를 잇는 테크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과 정책 역학에 대한 다문화적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주요 저서/논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2020년 12월, 로이터 리퍼니티브 등재), "위믹스, Web3 게이밍과 윤리"(2023년 1월), 그리고 "2025 글로벌 테크 트렌드: '17가지의 트렌드 혁명이 오고 있다'(2024년 11월)가 있습니다.

ITIF 소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거듭 인정받아 온 독립적인 501(c)(3) 비영리 초당파 연구 및 교육 기관입니다. ITIF의 사명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기회, 진보를 촉진하는 정책 솔루션을 수립, 평가 및 진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tif.org/abou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2026년 8월 28일 접속,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korea>.
2. “미국과 한국 간 무역의 가치는 얼마인가?” USAFacts, 2026년 7월 21일 업데이트, <https://usafacts.org/answers/what-is-the-value-of-us-trade/countries/south-korea/>.
3. 미 의회조사국, *한미 양자 무역 관계*, IF10733, 2026년 3월 19일 업데이트,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733>; 이승연(씨니) 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한국은 적보다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 (ITIF, 2025년 8월 4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8/04/south-korea-should-choose-friends-over-foes-for-semiconductor-production/>; “미국 / 대한민국,” 경제복잡성관측소, 2026년 8월 28일 열람,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country/usa/partner/kor>.

4. 톰 캐닝,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미화 10억 달러(역사적 원가 기준),” Statista, 2026년 8월 12일,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98765/foreign-direct-investment-south-korea-us/>; CRS, *한미 양자 무역 관계*, IF10733; Alex Kwok, “트럼프 관세 압박 이후 한국, 미국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Jurist, 2026년 3월 15일, <https://www.jurist.org/news/2026/03/south-korea-commits-350-billion-to-u-s-strategic-industries-following-trump-tariff-pressure/>; 연합뉴스, “서울,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공약 이행을 위한 국영 기구 출범,” *Korea Times*, 2026년 6월 18일, <https://www.koreatimes.co.kr/economy/20260618/seoul-launches-state-run-body-to-implement-350-bil-us-investment-pledge>.
5. Coupang, Inc., “미국 기술 기업 쿠팡, APEC CEO 서밋에서 AI 기반 상거래 가속화 비전 발표,” 보도자료, 2025년 10월 28일, <https://ir.aboutcoupang.com/news-events/news/news-details/2025/U-S--Technology-Company-Coupang-Presents-Its-Vision-to-Accelerate-AI-driven-Commerce-at-the-APEC-CEO-Summit/default.aspx>.
6.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0%는 디지털 플랫폼 없이는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참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21 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MSS Announces Results of 2021 Survey of Online Platform Business Users], 보도자료, 2026년 9월 4일 확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0621&parentSeq=1030621>.
7. 이정문 의원 외 13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Bill on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의안번호 2215044, 2025년 12월 9일 발의,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5일 열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044/detailRP>; Lilla Nóra Kiss, “한국의 신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주의 환기 브리핑: 플랫폼 규제를 재고해야 되는 이유” (ITIF, 2025년 9월 4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9/04/cautionary-briefing-for-koreas-new-kftc-chair-platform-regulation-rethink/>.
8. 나이절 코리(Nigel Cory), “대한민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6년 2월 25일, <https://www.nbr.org/publication/south-koreas-online-platform-fairness-bill-a-new-digital-nontariff-barrier-in-u-s-rok-trade/>.
9. 메리디스 브로드벤트(Meredith Broadbent) 외, “차별적 EU 정책에 보복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정보기술혁신재단, 2026년 6월 10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6/06/10/the-case-for-using-section-301-to-retaliate-against-discriminatory-eu-policies/>.
10. 코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44호 (2026년 5월 12일)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808225>.
12. 나이절 코리, “KFTC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정성적 증거 및 분석,”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5년 11월 12일, <https://www.nbr.org/publication/understanding-the-impact-of-kftc-enforcement-on-u-s-firms-qualitative-evidence-and-analysis/>.
13. “(2보) 대법원, 불공정 영업 행위로 쉐킵에 부과된 사상 최대 1조 원 과징금 확정,” 연합뉴스, 2023년 4월 13일, <https://en.yna.co.kr/view/AEN20230413004852315>.
14. “한국 규제 당국, 구글에 2,249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2022년 2월 15일, <https://en.yna.co.kr/view/AEN20220215008700320>.
15. “(2보) 구글, 앱 시장 불공정 행위로 421억 원 과징금,” 연합뉴스, 2023년 4월 11일, <https://en.yna.co.kr/view/AEN20230411003952320>.

16.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Deliberation Proceedings Initiated in Case Concerning Alleged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Google’s App Market”], 정책 브리핑, 2026년 7월 1일,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69104>.
17. “(속보) 쿠팡, 검색 알고리즘·상품 리뷰 조작 혐의로 1,400억 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2024년 6월 13일, <https://en.yna.co.kr/view/AEN20240613004851320>.
18. “FTC, 쿠팡에 ‘순위 조작’으로 1,628억 원 과징금 부과... 소매업계 최대 규모,” 연합뉴스, 2024년 8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7131400002>.
19. Coupang, Inc.의 분기 보고서(Form 10-Q), 2026년 6월 30일 종료 분기, 2026년 8월 4일 제출,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34584/000183458426000073/cpng-20260630.htm>.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Organizat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대통령령 제36461호, 2026년 6월 30일, 2026년 10월 1일 시행,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2370>.
21. Ibid.
22. Cory, “KFTC 집행이 미치는 영향 이해.”
23.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1월 1일 기준 최종 문안,” 2019년 1월 1일,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미국 무역대표부, “팩트 시트: 미국과 한국,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합의에 합의,” 2025년 11월,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5/november/fact-sheet-united-states-and-korea-agree-korea-strategic-trade-and-investment-deal>.
24. 정환 외,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따른 플랫폼 사전 규제 제안,” Lee & Ko 반독점 및 경쟁 뉴스레터, 2023년 12월, https://www.leeko.com/news/anti/202312/202312_e/anti_full.pdf.
25. 로버트 D. 앳킨슨, “결정의 순간: 한국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이 미칠 광범위한 영향,” *Korea Times*, 2024년 1월 18일, https://koreatimes.co.kr/www/nation/2024/01/784_367201.html.
26. 김앤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 지침」, 2023년 1월 12일, https://www.kimchang.com/en/insights/detail.kc?idx=26661&sch_section=4.
27.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Guidelines on Review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418호, 2023년 1월 12일,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266&chrClsCd=010201>.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945호, 제415회 국회(임시회기), 민형배 의원 등 발의, 2024년 6월 25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945/detailRP>.
2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94, 제418회 국회(정기회기), 강준현 의원 등 발의, 2024년 10월 21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4794/detailRP>.
30. 나이절 코리와 로버트 홀리먼, “부당한 한국의 경쟁 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 보호하기,” 전미아시아연구소, 정책 브리프, 2025년 6월 12일, <https://www.nbr.org/publication/safeguarding-u-s-companies-from-unfair-south-korean-competition-policies/>.
31. 공정거래위원회,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Platform Monopoly Policy to Protect Livelihoods”], 2023년 12월 19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3172>.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15044호, 제429회 국회(정기회기), 이정문 의원 등 발의, 2025년 12월 9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044/detailRP>.
33. 미국 하원, 2026년 온라인 판매자 권리장전법, H.R. 9799, 제119차 의회 제2회기, 2026년 7월 21일 발의,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9hr9799ih>.
34. 미국 상원, 미국 혁신 및 온라인 선택법, S. 4746, 제119대 의회 제2회기, 2026년 6월 10일 발의,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9s4746is>; 미국. 하원, 앱 스토어 자유법, H.R. 3209, 제119대 의회, 제1회기, 2025년 5월 6일 발의,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9hr3209ih>.
35. 김세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 될 위험이 있다” (ITIF, 2025년 12월 22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12/22/koreas-online-platform-fairness-bill-risks-becoming-digital-non-tariff-barrier/>.
36. 코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37. 조지프 V. 코니글리오, “한국의 공정성법안 제안: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것인가?” (ITIF, 2026년 1월 21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6/01/21/koreas-proposed-fairness-act-will-it-discriminate-against-american-firms/>.
38. USTR, “팩트시트: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
3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웹사이트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 작성.
40.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24-21호, 2024년 8월 28일 시행, 1-2, 8-14, <https://www.ftc.go.kr/eng/downloadBbsFile.do?atchmnflNo=52326>;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13, 대통령령 제34502호, 2024년 5월 10일, 번역.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번역센터, 2026년 9월 11일 접속,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67709&lang=ENG.
41.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 기업, 수익 증가,” *Korea JoongAng Daily*, 2010년 3월 21일,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foreigninvested-firms-see-gains/10015767>.
42. 라일리 월터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점점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연구국, 2026년 5월 5일, <https://www.nbr.org/publication/south-koreas-companies-face-increasing-competition-from-within-china/>;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웹사이트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
4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웹사이트와 관세청의 「국가별 무역통계」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 관세청, https://tradedata.go.kr/cts/index_eng.do.
44. 정민희, “4대 재벌이 한국 경제를 떠받친다,” *BusinessKorea*, 2022년 8월 10일,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53>.
45.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웹사이트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 작성.
4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금지”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심결 사례” [심결 사례] 섹션, 2026년 9월 15일 접속,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0>.
47.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웹사이트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 작성.
48. Ibid.
49. Ibid.
50. Ibid.
51. Ibid.

5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예규 제470호, 2024년 10월 17일 시행,
<https://www.ftc.go.kr/eng/downloadBbsFile.do?atchmnflNo=52327>.
5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54.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웹사이트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자체 작성.
55.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Draft Act on Fairness in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공고 제2020-129호, 법제처 입법예고, 2020년 9월 28일(의견 제출 기간은 2020년 11월 9일까지), 2026년 9월 15일 열람,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60857&lawType=TYPE5&mid=a1_0104010000; 이환우, “한국,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 일축,” *코리아타임스*, 2021년 10월 5일,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11005/korea-dismisses-possibility-of-toughening-rules-on-big-tech-firms>; 조용석, “조성욱: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보다 훨씬 덜 엄격하다,’” *Edaily*, 2021년 9월 15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791686629180448>; “CPI 대담… 조성욱 위원장과,”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21년 5월,
<https://www.competitionpolicyinternational.com/wp-content/uploads/2021/05/Asia-Column-May-2021-Full.pdf>.
56. 정부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Bill on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의안번호 2107743, 2021년 1월 28일 발의, 제383회 국회(임시회), 법제처 국가법령의견센터, 2026년 9월 15일 접속,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7743/detailRP>.
57.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따른 플랫폼 사전 규제 제안,” Chambers and Partners, 2023년 12월 29일, <https://chambers.com/articles/kftc-proposes-ex-ante-regulation-of-platforms-under-the-platform-competition-promotion-act-5>; 이민형, “[인터뷰] 공정거래위원장,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Korea Times*, 2024년 1월 2일,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40102/interview-ftc-chief-vows-to-scrutinize-monopolistic-platform-firms-for-irregularities>.
58. 이민형,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FTC 위원장 후보자가 밝혀,” *코리아타임스*, 2025년 9월 5일,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50905/immediate-push-for-online-platform-law-unlikely-ftc-chairman-nominee-says>; 릴라 노라 키스, “한국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겐 전하는 주의 당부 브리핑: 플랫폼 규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 (ITIF, 2025년 9월 4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9/04/cautionary-briefing-for-koreas-new-kftc-chair-platform-regulation-rethink/>.
59. 박재혁,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혀,” *Korea Times*, 2026년 1월 9일,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60109/online-platform-law-doesnt-target-us-tech-firms-antitrust-chief-says>.
60.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Deliberation Procedure Opened in Case of Google’s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Related to App Market”], 보도자료, 2026년 7월 1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01,02&nttSn=47673>.
61. 이송훈, “공정위, 쿠팡 본사 또 압수수색…10년치 자료 요구,” *Business Korea*, 2026년 9월 2일,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020>.

62. 코리와 홀리맨, “불공정한 한국의 경쟁 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 보호”; Cory, “미국 기업에 대한 KFTC 집행의 영향 이해 : 질적 증거 및 분석”; 코리, “대한민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경쟁을 가로막다: 한국의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중간 직원 보고서, 제119대 의회, 2026년 7월 1일, <https://judiciary.house.gov/sites/evo-subsites/republicans-judiciary.house.gov/files/evo-media-document/south-korea-discriminatory-enforcement-report-draft-final.pdf>.
63. OECD, “연혁,” 2026년 9월 3일 접속, <https://www.oecd.org/en/about/history.html>.
64. OECD, “미국,” 2026년 9월 3일 접속, <https://www.oecd.org/en/countries/united-states.html>; OECD, “한국,” 2026년 9월 3일 접속, <https://www.oecd.org/en/countries/korea.html>.
65. OECD, 「우리가 일하는 방식」, 2026년 9월 3일 접속, <https://www.oecd.org/en/about/how-we-work.html>.
66.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 OECD/LEGAL/0465 (파리: OECD, 2021년 10월 6일),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65>.
67.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 II, 3.
68.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 OECD/LEGAL/0465 (파리: OECD, 2021년 10월 6일),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65>.
69. OECD, “경쟁위원회,” OECD 정부간 활동 온라인 안내서, 2021년 6월 4일 웨이백 머신에 보관됨, <https://web.archive.org/web/20210604214507/https://oecdgroups.oecd.org/Bodies/ShowBodyView.aspx?BodyID=1673&Lang=en>; 노태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임기 8 개월 넘게 남기고 퇴진” [김형배, 임기 종료를 8개월 넘게 앞두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직에서 물러나다], *매일 마케팅 신문* (매일마케팅신문), 2023년 7월 4일, <https://www.maeilmarket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0>; OECD, “경쟁위원회,” OECD 정부간 활동 온라인 안내서, 2026년 6월 3일 최종 게시, https://oecdgroups.oecd.org/Bodies/ShowBodyView.aspx?BodyID=1673&Lang=en#_ftn0.
70.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권고, II, 3, a-c.
71. USC 골드 법학대학원, 초국가법 및 비즈니스 센터, 경쟁 규제 기관: 비교 검토 및 평가 보고서 (로스앤젤레스: USC 골드 법학대학원, 2023년 6월), <https://gould.usc.edu/resources/downloads/faculty/centers/ctlb/ctlb-evaluation-project.pdf>.
72. 미국 무역대표부, “USTR,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른 사상 최초의 협의 요청,” 보도자료, 2019년 3월 15일,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march/ustr-requests-first-ever>.
73.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6장: 경쟁 관련 사항,”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korus/asset_upload_file193_12715.pdf.
74. USTR, “USTR, 한미 FTA에 따라 사상 최초로 협의 요청.”
75.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TR,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경쟁 관련 우려를 제기하다,” 보도자료, 2019년 7월 9일,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july/ustr-pursues-competition-related>.
76. Bae, Kim & Lee LLC, “BKL 법률 동향 - 독점금지법 2020 - 8: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2020년 5월 19일, <https://www.bkl.co.kr/en/law/insight/newsletter/3010>.
7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20년 무역 연례 보고서: 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운영, 제72차 보고서, 간행물 5228 (워싱턴 D.C.: USITC, 2021년 9월),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228.pdf>.

78. 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 및 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1974년 무역법(개정 포함) 제301조에 따른 구제 청원: 쿠팡 주식회사를 겨냥한 대한민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 미국 무역대표부에 2026년 1월 22일 제출,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Issue_Areas/Enforcement/Section%20301/Coupang/2026.01.2%20Section%20301%20Petition.pdf.
79. KORUS, 제 16.1.2.
80. KORUS, 제 16.8.
81. KORUS, 제 16.7.1-2.
82. 행정 명령 제14,257호, 90 연방 규정 제15041호 (2025년 4월 2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83. Christopher T. Zirpoli,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무효 판결,” CRS 법률 사이드바 LSB11398, 미국 의회조사국, 2026년 2월 23일,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LSB11398>.
84. 행정 명령 제14,257호, 90 연방 관보 제15041호 (2025년 4월 2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85. 제헌(제임스) 김과 닐스 볼레센 오스터버그, “관세를 둘러싼 갈등 (I):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실질 관세율은 백악관의 주장보다 훨씬 낮다,” 한미경제연구소, 2025년 4월 3일, <https://keia.org/analysis/the-beef-with-tariff-i-south-koreas-true-tariff-on-u-s-goods-is-far-lower-than-white-house-claims/>.
86. 백악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 2025년 11월 13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87. 김과 오스터버그, “관세를 둘러싼 갈등 (I):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실질 관세율은 백악관의 주장보다 훨씬 낮다.”
88. 행정 명령 제14,257호, 90 연방 관보 제15041호 (2025년 4월 2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89. 백악관, “팩트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집행 지속 및 새로운 관세율 발표,” 2025년 7월 7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continues-enforcement-of-reciprocal-tariffs-and-announces-new-tariff-rates/>.
90. 행정 명령 제14,326호, 90 연방 관보 37963호 (2025년 7월 31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
91. 백악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 2025년 11월 13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92. Christopher T. Zirpoli,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무효 판결,” CRS 법률 사이드바 LSB11398, 미국 의회조사국, 2026년 2월 23일,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LSB11398>.
93. 포고령 제11,012호,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 수입 부과금 부과,” 91 연방 관보 9339 (2026년 2월 20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

94. Ibid.
95. Ibid.
96. Ibid.
97. 로드리고 발본틴과 김세진,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오도의 여지가 있는 ‘공정법’을 저지해야 한다” (ITIF, 2025년 11월 20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11/20/korean-government-should-push-against-the-misleading-fairness-act/>.
98. 릴라 노라 키스와 힐랄 아카, “한국의 새로운 공정법은 혁신을 위축시키고 통상 협상을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 (ITIF, 2025년 7월 24일),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7/24/koreas-new-fairness-act-risks-chilling-innovation-and-derailing-trade-talks/>.
99. 리아나 웡과 마크 E. 매니언, “한미 양자 무역 관계,” CRS In Focus IF10733, 의회조사국, 2026년 3월 19일 업데이트,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26-03-19_IF10733_f7e690223cedbf90ed194a522ea9ecddfc5d2a1e.pdf.
100. Danielle M. Trachtenberg, 「1974년 무역법 제301조」, CRS In Focus IF11346, 미 의회조사국, 2026년 7월 2일 업데이트,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
101. 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 디지털 서비스세」, 2026년 9월 16일 접속, <https://ustr.gov/trade-topic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digital-services-taxes>.
102. Danielle M. Trachtenberg, 「1974년 무역법 제301조」, CRS In Focus IF11346, 미 의회조사국, 2026년 7월 2일 업데이트,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
103. 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 및 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개정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구제 청원: 쿠팡 주식회사를 겨냥한 대한민국정부의 법률, 정책 및 관행,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됨, 1월 22일, 202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Issue_Areas/Enforcement/Section%20301/Coupang/2026.01.22%20Section%20301%20Petition.pdf.
104. Ibid.
105. 아리 호킨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광범위한 조사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통상 진정을 취하하다,” POLITICO Pro, 2026년 3월 9일,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6/03/us-investors-withdraw-korea-trade-petition-as-ustr-eyes-broader-probe-00819020>.
106. Ibid.
107. 세계은행, “소비자물가지수(2010 = 100)—대한민국,” 세계개발지표(IMF 국제금융통계 자료 기준), 2026년 8월 20일 접속,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P.CPI.TOTL?end=2025&locations=KR&start=2016>.
108.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조회” [Search for Legal Violations],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2026년 8월 19일 접속, <https://case.ftc.go.kr/ocp/co/ltfr.do?pageIndex=1&caseNo=&caseNm=&decsnNo=&startRceptDt=&endRceptDt=&reprsntManagtTyCd=002&reprsntViolTy=&searchKrwrd=>.
109. 세계은행그룹, “대한민국 — 세계은행 기업 설문조사 2024,” 참조 ID KOR_2024_WBES_v01_M, 마이크로데이터 라이브러리, 2025년 5월 20일 생성, <https://microdata.worldbank.org/index.php/catalog/6689>.